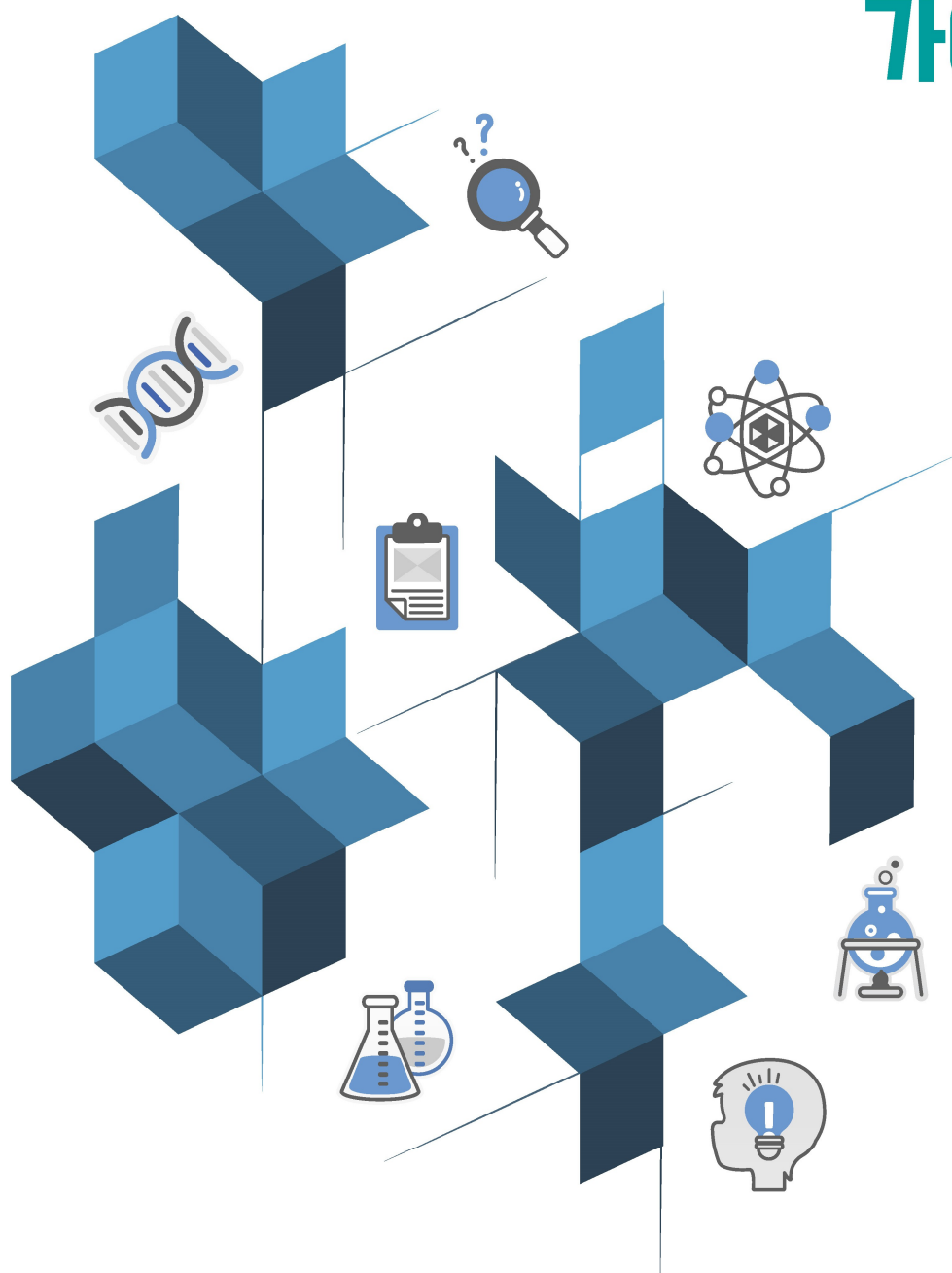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202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절차편은 제재처분 과정에서 참고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제재처분 대상·방식·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 관련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구자권익보호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목 차

● [제1장] 제재제도 개요	1
제1절 법적 근거	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6
〈부칙〉	6
제2절 연혁	11
제3절 주요용어	12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12
2. 참여제한	12
3. 제재부가금	12
4. 회수	12
5. 연구개발비 환수	13
6.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행위	13
7. 부정행위	14
제4절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주요내용	16
1. 기본사업에도 제재처분의 효력 미침	16
2. 제재처분 시효 도입	16
3.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16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1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검토 위원회 신설	19
6. 제재처분 공개	19
[제2장] 제재처분 절차	21
제1절 제재처분 개요	21
1. 제재처분 주체	21
2. 제재처분 대상 및 기준	21
3.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	23
4. 제재사유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절차편]

● 제2절 제재처분 절차	26
1. 제재사유의 발생	26
2. 조사 및 검증·보고	27
3.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29
(1)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29
(2) 제재처분 평가단 역할	29
(3) 제재처분 심의 기준	30
가. 참여제한	30
나. 제재부가금	32
다. 연구개발비 환수	37
4. 사전통지	38
5. 재검토 요청	39
6. 확정통보	39
7. 통지 및 통보의 방식 : 처분효력의 발생	39
8.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41
9. 납부 및 사후관리	42
10. 국세체납처분	42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42
(2) 국세체납처분 절차	43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45
(4)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46
(5) 소멸시효	46
제3절 기타	48
1.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48
2. 과제참여 가능 시점 및 과제관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48

목 차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51
2.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54
3.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	56
4.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3호)	58
5. 보안대책 위반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60
6. 보안사항 국내유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62
7. 보안사항 국외유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64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	66
9. 그 밖에 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	68
10.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	70
11. 기술료 또는 수익 미납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	72
12.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73
1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7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절 차 편



제1장 제재제도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사유(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2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연구개발활동(법 제2조 제8호 각호)의 참여가 제한됨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제출, 사전 기획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참여, 평가단 결과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참여, 제재처분평가단 참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참여가 제한됨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법 제32조 제3항)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 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 (제33조 제1항)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 (제33조 제2항) 제재처분 사전통지
- (제33조 제3항) 재검토 요청
- (제33조 제4항)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 (제33조 제6항) 제재처분 확정통보
- (제33조 제7항) 제재처분 등록·공개
- (제34조 제2항)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독촉 등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 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 (제59조 제1항)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처분기준(별표6)
- (제59조 제2항) 제재사유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별표7)
- (제59조 제3항) 연구개발비 환수 사유, 기준, 대상
- (제60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제63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령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사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 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2조 제10호) 재검토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제3조) 부정행위의 제보
- (제4조)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 부 칙 〉

- '21.1.1이후 혁신법상 제재사유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심의내용 및 절차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름

※ 실무상 '21.1.1 이후 사전통지가 진행된 사안은 혁신법에 따른 절차(재검토요청 등)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 심의내용(제재사유, 제재대상자, 기산일 규정 등)은 기존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해야 함

법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제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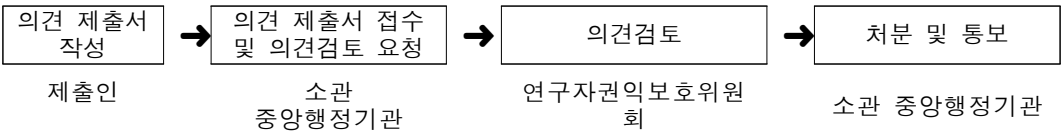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illegible]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원) ☐ 환수금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이제

신청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제2절 연혁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 연구비 용도와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7. 5월 제재조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9. 3월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고시 근거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21.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의 대대적 개편
 - (시효도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3절 | 주요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혁신법 제2조 제1호)
-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함(혁신법 제2조 제2호)

2. 참여제한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혁신법 제32조 제1항)

3. 제재부가금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혁신법 제32조 제1항)

4. 회수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 결과 아래와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혁신법 제13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각호)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비 환수

- 참여제한, 제제부가금과 별개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수 있음 (혁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제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행위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를 의미함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7. 부정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제재사유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및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위반, 국내외 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수행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괄규정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 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주요내용

1. 기본사업에도 제재처분의 효력 미침

- 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31조~35조)’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출연연 기본사업 등에도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효력이 미침

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 제재처분 시효 도입

- 제재처분은 침익적 처분인바 해당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를 때 '21.1.10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행위에 대해 혁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효(제척 기간)은 절차적인 부분으로서 제재대상자에 유리함을 고려하여 '21.1.10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기산일 제도(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 1.적용기준 다목)는 제재사유가 되는 행위가 '21.1.1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적용됨

3. 제재처분 사유의 변경

- ‘연구결과 불량 → 연구과정+결과 불량’, ‘연구비 용도 위반 → 연구비 용도 + 기준 위반’
-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별도로 명시

- 조사방해행위, 연구비 허위증빙·거짓 보고 등 제재사유 신설
- 종전의 환수금 미납은 제재사유에서 제외

〔 종전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		〔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1.1시행)				
1호	연구결과 불량	1호	과정결과불량			
8호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2호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 제31조 제1항 각호 (부정행위*) 〉			
			1	위조·변조·표절		
5호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6호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3	성과소유위반		
2호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4	보안대책 위반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7호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5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행	신청 부정	
					수행 부정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①	조사방해행위	
				②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	
				③	생명윤리 위반	
				④	연구실 안전 위반	
3호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4호	포기			
4호	기술료 미납	5호	기술료 미납			
		6호	회수금 미납			
4의2호	환수금 미납					

* 「기본법」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명명하였으나, 「혁신법」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위반, 성과소유원칙 위반 등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전체를 '부정행위'로 명명

4. 제재처분의 종류 및 참여제한 기간·범위 조정

- 제재처분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으로 연구개발비 환수는 제재처분과 별도의 처분임
 -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 시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환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타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보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관련 정보도 등록·관리하여야함
 - ※ 연구개발비 환수는 기존 제재조치를 규정한 법령(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제재조치의 하나였음을 감안하여 기존대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환수금을 결정할 수 있음(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무방함)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사유가 대조적으로 조정됨
 - ※ 환수 : (종전) 모든 사유 → (변경) 용도와 사용
제재부가금 : (종전) 용도 외 사용 → 모든 사유
- 참여제한 기간이 10년(과학기술기본법 상 5년 이내)이내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으로 활동 등 국가연구개발활동(혁신법 제2조 제8호 각목) 전반에 대해 참여가 제한됨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활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검토 위원회 신설

- 기존 이의신청 절차에 같음하여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 제재처분평가단의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 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을 재검토하는 절차 신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6. 제재처분 공개

-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종 확정된 제재처분 주요 내용(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되는 제재처분은 한 제재대상자가 받은 단일 처분에서 5년 이상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제재 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처분된 경우임
 - ※ 제재처분의 공개는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된 시점부터 6개월 간 공개함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2장 제재처분 절차

제1절 제재처분 개요

1. 제재처분 주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재처분 통지·통보 권한을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음
(중앙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실무상 협조 가능)

- 다만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징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으며(혁신법 제22조 제1항) 재검토 요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제재처분을 검토할 수 있음(혁신법 제33조 제4항)

- 궁극적으로 제재처분의 최종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있음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제재처분 대상 및 기준

- 제재처분의 대상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임

- 제재처분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해야함

- 단, 기술료 미납 또는 회수금 미납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만 제재대상임(연구개발기관이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함(연구개발기관이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재처분 가능하며 이때 귀책사유를 고려해 제재대상을 선정해야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할 수 있음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 만약,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형태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
- * 이는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과 실제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참여제한 효력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 제재처분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함

3.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대상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혁신법 제32조 제1항)
 -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혁신법 제32조 제2항)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처분과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 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혁신법 제32조 제3항)

4. 제재사유

- 관련 법령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사유는 아래 표와 같음

제재사유			요약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1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누설유출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제재사유			요약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조사방해행위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제2절 제재처분 절차



1. 제재사유의 발생

- 제재사유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관리 과정(평가단계, 정산단계 등)에서 적발되거나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음

* 후속조치를 해야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와 자료 등 공유에 적극 협조 필요

- 제재사유를 인지한 기관은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해야 함

(1) 부정행위의 경우

-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차적인 조사·검증기관으로서 이외의 기관은 인지한 내용(관련 자료 등)을 이첩해야함

* 해당 부정행위 발생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연구부정행위 〉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이외의 경우

- 부정행위 외의 제재사유*에 대해서는 인지한 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이 후속조치(제재처분평가단 등) 진행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혁신법 제32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 외의 제재사유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 및 검증·보고

(1) 부정행위의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함(혁신법 제31조 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혁신법 제31조 제3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각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할 수 있음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외의 경우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사유별 관련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함

3. 제재처분 평가단 심의

(1)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종류, 수준 등을 검토해야함(혁신법 제33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하지 않고 제재처분 할 수 있음

- 이때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운영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22조 제1항)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시행령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각 부처는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 특히 제재 심의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2) 제재처분 평가단 역할

- 제재처분평가단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 제재심의 안전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재심의 안전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전의 보안을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장함

(3) 제재처분 심의 기준 : 시행령 별표6, 별표7**가. 참여제한**

- 참여제한 대상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①기관에게만 ②개인에게만 ③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 할 수 있음
-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혁신법 시행령 별표6)
-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 참여제한 기간 산정의 방법 : 합산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별 참여제한 기간 표를 참고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한 참여제한 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며 이때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은 10년을 한도로 함
 - ※ 합산기준은 단일 처분 시 10년을 초과하는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대상자가 참여제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제재처분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해당 제재대상자는 10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참여제한 기간 산정의 방법 : 가중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 표의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단, 가중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하며 회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의 제재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참여제한 가중사유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제한 기간 산정의 방법 :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표의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단 회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의 제재사유인 경우에는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참여제한 감경사유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후단의 '세부기준편'을 참고

나. 제재부가금

-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기준은 다음과 같음(혁신법 시행령 별표7)
- 제재부가금은 대상은 사안별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①기관에게만 ②개인에게만 ③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 할 수 있음
 - 이때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수인이 관련되어 제재부가금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총액을 관련자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분담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 시행령 별표7에서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의 병기가 없는 경우는 단계를 통틀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비에서 정부지분율만큼의 금액(출연금)을 의미함

A.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 기준

위반행위	재제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B. 개인*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

-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 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 기준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 제재부가금 부과액 산정의 방법 : 합산

-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 각 과제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표를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산출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하되 합산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배를 넘을 수 없음

※ 합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참여제한의 합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음

- 제재부가금 부과액 산정의 방법 : 가중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사유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단, 가중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함

제재부가금 가중사유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액 산정의 방법 :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제재부가금 감경사유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본 가이드라인 후단의 '세부기준편'을 참고

-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다. 연구개발비 환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 이때 정산단계에서 발견되어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 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부과함
 - ※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부정행위시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환수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함
-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환수금 납부 대상자가 경영 악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유를 판단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전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2항 각호)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사전통지의 방식은 '7. 통지 및 통보의 방식' 참고

5. 재검토 요청

- 기존법령상 '이의신청'에 갈음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재검토 요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에 따름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제재대상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6. 확정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함
 - *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확정통보의 내용과 방식은 사전통지 내용 참고 (7. 통지 및 통보의 방식 참고)
 - 사전통지와 확정통보는 구별되는 행정처분으로 확정통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통지 및 통보의 방식 : 처분효력의 발생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 공문표지에 처분의 근거, 참여제한·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자 특정, 처분 이유 및 사유, 불복절차 안내 등의 사항을 기재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략)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문서 송달의 방식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송달의 효력 발생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8.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통보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공개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7항)
- [등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할 제재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야함(혁신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 연구자번호
 -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제재대상자에 대한 단일 처분에 대해 1)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2)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 연구자번호
-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제재정보가 공개되는 제재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관련 법(혁신법 제33조 제7항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관련정보가 공개됨을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 시 명확히 명시하여 안내해야함

9. 납부 및 사후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함(혁신법 제34조 제2항)

※ 혁신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22조 제1항)

-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령 제63조 제2항)
-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함(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 체납액
 -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납부장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10. 국세체납처분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가. 체납처분

-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위하여 자력집행을 행하는 공법상의 절차, 즉 체납자에게 강제이행을 구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함

나.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비교

- 국세채납처분 절차는 공법관계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양 당사자 간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임
- 따라서 국세채납처분 절차의 경우 사법 당국의 협력 없이 스스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압류·추심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을 통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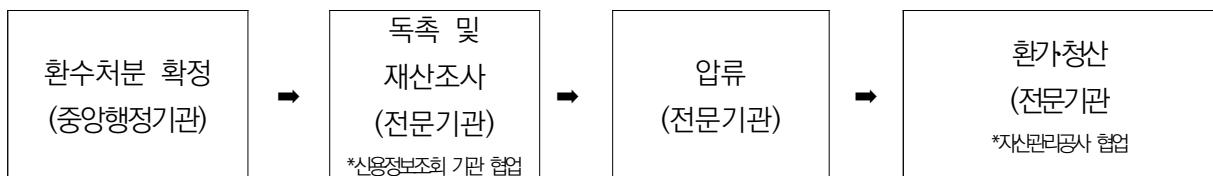
다. 국세채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경합

-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법률상 대등하므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두 절차가 경합 시에는 각각 공매와 경매로 진행되어 해당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먼저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2) 국세채납처분 절차

- 혁신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확정권원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 및 국세채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혁신법 제34조 제2항 및 혁신법 제22조 제1항)

[1단계] 국세채납처분 절차 적용



[2단계] 1단계 진행 후 미납액 발생 또는 1단계 진행 불가시 민사집행 절차



- ※ 재산압류 등 국세채납의 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 1단계 채납처분완료 후에도 압류가 어려워 유체동산 등 추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2단계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
- ※ 압류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능 금액이 집행비용을 넘는 등 강제징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를 생략하고 법적조치 5년 유예(중단)

가. 환수처분 확정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환수처분에 따라 확정된 환수금 또는 제재처분에 따라 확정된 제재부가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나. 독촉

-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15일 이내 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해 독촉 절차를 진행하며, 독촉 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함
- 독촉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

다. 재산조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체납자에 대해 직접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조회 기관과 협약체결 후 개인의 상환여력정보 및 기업의 재무정보 확인가능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상환여력정보에는 자택정보 이력, 자택식별 요약정보(거주기간, 거주유형, 전용면적, 공시가격, 매매 상·하한가, 전세 상·하한가 등), 자택시세 정보, KB아파트상세정보 등이 있음
 -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변동(예금거래활동 추정), 자택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변동, 직장정보(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변동을 제공 받아 신용거래활동을 추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예금압류 등이 가능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로는 주거은행(예금채권압류에 활용), 신용등급체계(납부유예 판정시 활용), 경영진 정보, 주주현황(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요재무정보, 산업재산권, 법정관리 진행상황, 부동산 경매정보(배당금 압류에 활용) 등이 있음

라. 재산압류

- 부동산·차량 등 등기 자산, 채권, 예금, 주식, 무체재산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유형 구분 없이 압류가능, 이때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예금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 시 배당금 가압류 가능
-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기관으로부터 부동산경매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신용주체별로 제공받아 조치함. 채무자가 권리자인 경우 체납자의 배당금 수령액을 가압류하며, 체납자가 의무자인 경우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파악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재산조사 결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포함)이 존재할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압류등기 촉탁하고, 관할 등기소로부터 압류등기필 통지(1주일정도 소요)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마. 매각 및 청산

-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매각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처리하는 것도 가능함
-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 추심이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가압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심도 가능함
- 매각이 완료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 기일 및 배분계획서를 통보하면 전문기관은 배분희망 계좌정보를 포함한 지급동의서를 회신하여 청산 금액을 배분받음. 이때 체납자가 복수 부처의 과제에 동시에 체납한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일(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체납금을 먼저 충당하게 됨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가.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 * 다만 체납처분 목적물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 중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징수 정지 가처분이 있지 않은 이상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나.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가. 납부 대상기관의 폐업·부도 등으로 징수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납부대상 기관이 폐업, 부도, 파산, 심각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절차의 중지 정보를 내부 관리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 및 반영하여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징수를 중지한 경우라도 납부대상 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중지되었던 징수 조치를 개시함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납부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징수가 어려울 경우,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 ※ 「국가채권관리법」 제31조에서는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연체금 및 이자 포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납부 대상자의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채권 및 제재부가금 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채권 및 제재부가금 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신고 하여야함
 -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5) 소멸시효*

-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 단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민법 제165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해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나(혁신법 제32조 제5항) 이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제재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아님

제3절 | 기타

1. 현재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확정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혁신법 제34조 제1항)
 - 제재대상자가 연구책임자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평가를 통해 협약변경 또는 과제 중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혁신법 제15조 제1항)
 - 참여연구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협약의 변경을 통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음
- ※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어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할 수 있음

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과제참여 가능 시점 및 과제관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협약단계, 참여연구원 변경 등 연구원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 반드시 해당 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세부기준편



◆ 머리말 ◆

1.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의 의의

가. 세부기준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제재처분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 개개인의 수익을 박탈하거나 권익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처분상 재량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형평·타당한 상세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권고적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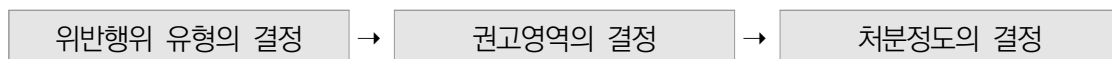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은 그 동안 실제 이루어진 제재처분 사례들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제재처분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며,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이다.

2. 제재처분 가중·감경 세부기준의 적용

가.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나. 적용방법



(1) 위반유형의 결정 : 법령 위반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 본 세부기준에 기재된 ‘유형의 예시’, ‘가중·감경요소의 예시’는 범례에 불과하고,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권고영역의 결정 : 일반인자, 특별인자의 존부를 확인하여 감경, 기본, 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일반인자’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가중·감경기준 중 각 1)부터 3)까지 [다만, 제재부가금의 가중기준의 경우에는 1) 및 2)] 명확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인자를 말한다. ‘일반인자’ 중, 모든 위반행위에 공통되며,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기 어려운 [별표 6] 및 [별표 7]의 각 감경기준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 비교적 일의적으로 판단 가능한 [별표 6]의 가중기준 2), 3) 및 [별표 7]의 가중기준 2)에 대하여는 각 본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기로 한다.

※ ‘특별인자’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가중·감경기준 중 각 4) [다만, 제재부가금의 가중기준의 경우에는 3)] 에 해당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처분정도의 결정 : 권고영역별 범위 내에서 처분의 정도를 결정한다.

※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중 가능하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감경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때 하한선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1.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평가결과 극히 불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특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극히 불량’의 판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이 “연구수행 과정 및 방법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동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등 준수)
-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초기·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무형적 발생물이 존재하는 경우
- 연구 성격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 또는 연구수행방법을 변경하여 시도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논문 게재, 특허등록, 저·역서 등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의신청 당시 논문 게재 또는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정하여진 정량적 목표에 비하여, 특허를 추가 등록하는 등 정량적 목표를 추가로 달성한 경우
-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의 정책, 관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지연 등으로 허가 (승인) 를 득하는데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나, 허가 (승인) 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치는 등 허가 (승인) 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외 과제수행은 계획대로 수행한 경우

[감경요소의 예시]

01.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경제·시장·기술개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져 더 이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미비한 경우
 - 경영악화, 폐업, 회생, 파산 등 과제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장애 사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미리 고지하고, 과제계속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02.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있어서, 대상기관 (대상자) 의 계획 지연 등이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불성실한 수행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그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이며, 대상기관 (대상자) 으로서는 그 연구개발기관에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게 과제수행의 어려움을 알리는 등 과제 중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대상기관 (대상자)
 - 경영상의 이유 (폐업, 회생, 파산, 연구인력 대부분의 퇴사, 연구비계좌의 압류 등) 로 인한 목표미달성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연구책임자
 - 최종 연구책임자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과제 수행의 극히 불량에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어, 연구책임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최종 연구책임자
 - (과제 종료 당시의 등기상 혹은 서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 과제 수행의 극히 불량에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어, 대표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된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종료 당시의 대표자)

- 기관의 대표자로서,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어 연구개발에 대해 전권을 받아 진행하고, 대표자는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그 대표자와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과 목표미달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 및 대상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2.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약상 의무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의무위반 사항의 시정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혁신법 및 관련 규정, 연구개발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

01. 의무위반 사항의 시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위반 사항을 기간이 도과하여 시정한 경우에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등 기한을 불과 1~2달 정도 도과한 경우

02.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의무불이행이고, 기관으로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대표자와 기관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3.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 등	참여제한		1년 6개월 ~ 3년	3년	3년 ~ 4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내부고발자	

[유형의 예시]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연구부정행위를 뉘우치고, 위·변조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혹은 해당 논문을 철회하거나 특허를 취소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기를 수정하는 등 부정행위의 시정을 한 경우

03.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극히 적은 경우
 - 성과보고 중 해당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04.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 외에 표절한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05. 내부고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전담기관) 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내부고발자

4.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 등	참여제한		1년 6개월 ~ 3년	3년	3년 ~ 4년 6개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75% ~ 150%	150%	150% ~ 225%
			개인	15% ~ 30%	30%	30% ~ 45%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혁신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여,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그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한다.
- 과제의 참여 비중 혹은 사업의 성격 (예를 들어, 기반구축사업 등) 과 무관하게 어느 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혁신법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연구부정행위를 뉘우치고,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복귀 (특허 이전·등록 등) 시킨 경우

03.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비에 비하여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극히 적고, 전체 성과 중 해당 연구개발성과 부분이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04.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5. 보안대책 위반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보안대책 위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의 유출방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 보안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성과의 유출방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

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3. 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안대책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 보안대책 중 단순하거나 경미한 절차 위반인 경우

04.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6. 보안사항 국내유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보안사항 국내유출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원상회복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보안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

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3. 원상회복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안사항의 유출이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기업) 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피해를 배상하는 등 원상회복한 경우

04.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7. 보안사항 국외유출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보안사항 국외유출	참여제한		2년 6월 ~ 5년	5년	5년 ~ 7년 6월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125% ~ 250%	250%	250% ~ 375%
			개인	25% ~ 50%	50%	50% ~ 75%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원상회복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보안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

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3. 원상회복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안사항의 유출이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기업) 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피해를 배상하는 등 원상회복한 경우

04.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 신청·수행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내부고발자	

[유형의 예시]

-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연구개발과제에 신청을 한 것을 의미한다.
-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것을 의미한다.
-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것을 의미한다.
-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감경요소의 예시]**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3.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 다른 어느 일방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04. 내부고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전담기관) 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내부고발자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6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를 의미한다.
-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위협·협박을 의미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한 것을 의미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감경요소의 예시]**01.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징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3.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10.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구분	제재처분		감경	기본	가중
1	수행포기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2년 ~ 3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준)	기관	50% ~ 100%	100%	100% ~ 150%
			개인	10% ~ 20%	20%	20% ~ 3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행위자 /기타	-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특별 인자	행위	•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양도·양수 •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 반납	-
	행위자 /기타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 사업의 특성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경요소의 예시]

01. 연구개발자료 또는 성과의 양도·양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포기 당시 연구목표 계획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존재하고, 연구개발자료 및 성과를 다른 수행기관에 이전하는 등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그 결과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

02.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 반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수행 포기 시점까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전액을 반납 완료하였거나 반납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03.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아닌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가 경영상의 판단 (구조조정, 직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 연구소 또는 사업부서 폐쇄 등) 에 의한 결정인 경우, 그 연구책임자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

11. 기술료 또는 수익 미납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기술료 또는 수익 미납	-	납부시까지	-

구분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특별 인자	행위	•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행위자 /기타	

[유형의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동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 이하,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01.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 이하,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12.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	납부시까지	-

구분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특별 인자	행위	•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행위자 /기타	

[유형의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동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 이하,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01.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회수 금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 기업신용 등급 열위 이하,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1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금액 (정부지원금 지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이하	참여제한	3월 ~ 6개월	6개월 이상 2년 이내	2년 ~ 3년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100%	100% ~ 150%
2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참여제한	1년 ~ 2년	2년 초과 4년 이내	4년 ~ 6년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100%	100% ~ 150%
3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참여제한	2년 ~ 4년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 7년 6월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0% ~ 100%	100%	100% ~ 150%
4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참여제한	2년 6월 ~ 5년	5년 초과 7년 이내	7년 ~ 10년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5천만 원 + 75% ~ 1억 원 + 150%	1억 원 + 150%	1억 원 + 150% ~ 1억 5천만 원 + 225%
5	5억 원 초과	참여제한	3년 6월 ~ 7년	7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제재부가금 (위반금액 기준)	3억 5천만 원 + 100% ~ 7억 원 + 200%	7억 원 + 200%	7억 원 + 200% ~ 10억 5천만 원 + 300%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일반 인자	행위	• 사소한 부주의·오류	• 학생인건비 등의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위반
	행위자 /기타	•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동종 전력 (참여제한의 경우에 한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복수의 위반행위

구분		감경요소의 예시	가중요소의 예시
특별 인자	행위	•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제 '우수'판정	-
	행위자 /기타	• 내부고발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위반금액 상당의 회사 또는 개인 비용을 과제 수행에 투입 • 소극가담 •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유형의 예시]

-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가중요소의 예시]

01. 학생인건비 등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경요소의 예시]

01.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나, 그 금액이 과소하고, 연구개발기관 혹은 연구자가 위반사실 발견 후 즉시 원복한 경우

02. 연구개발기관의 검증 후 필요한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증한 후 위반행위자를 징계 (징계부가금) 하거나, 위반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

0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현장조사, 확인서의 청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제재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04. 경영악화 등의 원인으로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의 동기가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금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20% 미만이며, 그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05. 과제 '우수'판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이 성실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최종) 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06. 내부고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적발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전담기관) 의 장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반행위를 알리고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 내부고발자

07.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적발 전에 위반금액 전부를 사업비 계정에 회복한 경우
 -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체하였으나, 적발 전에 해당 연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적발 전에 원래 지급해 주어야 할 거래처에 자비로 변제한 경우
- 동일한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반금액을 공탁한 경우
- 적발 후 제재처분 전에 위반금액의 전액을 회복한 경우

08. 위반금액 상당의 회사 또는 개인 비용을 과제 수행에 투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금액에 상응하는 회사 또는 개인 돈을 과제 수행 과정에 투입하였고, 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09. 소극가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행위를 주도하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방관하거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자 아닌 대표자, 기관에 대하여 감경 가능; 위반행위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위반행위자 아닌 대표자,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감경 가능).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형사고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 연구책임자로서 사업비의 관리·집행 의무가 있으나,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고, 용도와 사용 금액이 회사 운영자금, 양산목적 등에 사용된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감경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대표자
 - 직장 내 상하관계에 기하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였고, 용도와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대표자 혹은 회사에 귀속된 경우 직원인 참여연구원

10.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인 법인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각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 및 대표자